

○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감사

- 감사기간 : 2009. 3. 30~4. 17
- 감사인원 :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 김 윤수와 9명
- 감사대상업무 : 소비자원 업무 전반

조치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요약

일련 번호	제목	조치요구사항	조치계획(결과)
1	주요사업계획 변경시 관련 규정 미준수	①주요 사업계획 변경 시 정관 등 관련 규 정 준수 ②공정위 승인절차 이행 철저 요망	①사업선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사업계 획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으로 전면개 정(6.22)→정관과 동일하게 주요사업계 획의 변경전 공정위 승인 등 지침 개정 ②‘사업계획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’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내부심의 및 공정위 승인절차 준수 관리강화
2	정책연구과제 선정절차 부적정	①정책연구과제 선정 절차 명확화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②공정위와 협의토록 정책연구심의위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	①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마련 규정 개정(10.27,138회 이사회회의결) -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강화 ②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을 당연직으로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, 운영활성화 (원장, 부원장, 상임이사, 학계, 언론계, 연구기관,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)
3	피해구제 사건처리 부적정	취하, 합의 등 처리 종결시 관련규정 준 수와 동일사례 재발 방지 업무철저	①취하 종결시 취하서를 받도록 하고, 받기 곤란한 경우 사건처리보고서에 신청인의 통화내용을 음성파일로 첨부 또는 내용 명기 ②합의 종결시 합의서 작성 후 양 당사자 및 우리 원 각 1부씩 보관 하고, 전화 확 인시 사건처리보고서에 통화내용의 음성 파일 첨부 또는 종료사유와 통화일시 등 명 기하고, 서면확인시에는 동 서면의 스캔 후 사건처리보고서에 첨부
4	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부적정	사건취하, 조정결정 통지, 기간연장 후 처리지연 예방을 위 한 관련규정 준수 철저	①신청인이 유선 취하시 취하서를 제출토록 하고, 상임위원에게 보고 후 종결. 취하서 미제출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취하로 종결됨을 서면통보. 향 후 서면통지가 어려워 분쟁조정규칙개정 검토 ②조정결정통지기한 미준수: 자체워크숍(6.3)을 통해 통지기한 준수 및 연장기한 내 처리준수 직원 교육

일련 번호	제목	조치요구사항	조치계획(결과)
5	소비자분쟁 조정기한 연장제도 운용 불합리	①소비자기본법시행 령과 상충(서면 이외 통보방법 허용) 되는 조정규칙 개정 ②기한연장 사유인 ‘부득이한 사정’ 기준 설정, 운영 방안 마련	①기한연장 관련 분쟁조정규칙(제28조 제2항: 전화, 문자전송 등 통보방법)개정 (삭제)(8.17) ②기한연장 사유와 관련하여 분쟁조정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규정한 기준의 4. 연장사유 [추가사실조사, 당사자(신청인, 피신청인)요청,기타] 철저 준수토록 직원 교육 실시, 기준운영철저 및 소비넷시스템 활용
6	교통비 집행 부적정	이사회 의결사항의 미의결 및 의결내용 과 달리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의 적정 요망	(기조치)2009년 1월부터 교통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(100천원)지급 (향후조치)재발방지를 위해 관리감독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관련절차 준수에 만전 을 기하도록 엄중 지시
7	관외 출장시 출장이행 여부 미확인	준정부기관 예산집 행지침에 맞게 출장 이행 여부 확인 근거 규정 마련 및 이행 철저	o 예산집행관리지침 개정(6.19) -해외·시외 출장시 증빙자료(영수증 등)를 복무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토록 관외출장 시 출장이행 여부 확인근거 마련 -관련규정 준수 철저
8	자체교육시 내부강사요원 강사료 지급 등 부적정	정부예산집행지침에 맞게 자체 교육강사 료,위원회 참석수당 불지급으로 예산집행 관리지침 개정 요망 및 동일사례 재발방 지 업무 철저	o 예산집행관리지침 개정(6.19) -원내 임직원이 교육·강의 등 역무 제공 시 수당지급을 근무시간 이외로 한정 -개정 규정 준수 철저
9	자산구입비 관련 예산집행의 부적정	①정부예산집행지침 에 맞게 편성예산 범위 내 집행, 불 가피한 경우 이·전용 후 집행 요망 ②수용비로 자산 취 득한 관련자 2인 주의장 발부	①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, 불가 피한 경우 이·전용 조치 후 구매 요청할 계획 ②관련자 2건(1인) 주의장 발부(6.15) : 주의 촉구

일련 번호	제목	조치요구사항	조치계획(결과)
10	청사관리용역 계약체결의 부적정	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을 준수하여 경쟁입찰 사안을 수의계약 금지함. 청사관리계약업무 철저	o 향후 경쟁입찰을 통한 업체선정
11	위탁연구용역 관리의 부적정	①위탁연구 용역계약 관리감독철저(재발 방지) ②관련자 6인 주의장 발부	①위탁연구 용역계약시 관리감독 철저이행 을 통한 재발방지 ②관련자 6인 주의장 발부(6.15) : 주의촉구
12	대외문서 관리 부적정	외부문서(해명서 등) 접수시 문서규정 준 수 및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문서관리 철저	o 피해구제 관련 대외문서의 경우 문서규정에 따라 접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가공하여 접수함으로써 문서관리업무 철저 -본부, 팀 단위 교육 및 수시점검 실시
13	시료관리 및 처분업무의 부적정	①보관시료 조속 처 분,시료 시험검사 업무규정 준수 관 리철저 ②시료및상품처리지 침에 관리전환 물 품 처분기한 규정 마련:장기방치억제	①관련규정 준수 철저 자체교육 시행(6.12) ②시료 및 상품처리지침 전문개정(6.20) -처분기한 조항신설 -내용중복조항 통합 -형식,용어(명칭) 통일
14	위해정보부실 및 평가 미실시	① 병 원 별 위 해 정 보 제출실적 종합평가, 위해정보의 효율적 수집 및 활용방안 마련 ②평가 후 지원경비 차등 지급 등 경비 절감 방안검토, 시행 요망	①10개 병원과 위해정보 제공계약에 따라 2009.12월말 제출실적 평가후 그 결과에 따라 2개 병원 계약해지 및 8개 병원 2010년 말 차등지급 검토 ②위해정보제출기관 종합적 분석을 통해 2009.12.말까지 위해정보의 효율적 수집 및 활용 방안 마련 예정
15	주요 내규의 이사회 미심의	공기법상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에 맞게 원장의 시험검사수수료세칙의 부칙조항을 이사회 심의 의결로 개정	o 시험검사업무규정개정(10.27, 138회이사회 의결) -시험검사수수료 규정화 및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함

일련 번호	제목	조치요구사항	조치계획(결과)
16	인사규정상 직원전보 원칙 및 기준 미비	인사규정(시행세칙) 에 전보기준(원칙) 명문화 방안 마련	○ 인사규정 개정(6.18,132회 이사회결의결) -경력개발제도(CDP)시행근거마련 ○ 경력개발제도 운영지침 마련(11.25) -전보기준, 개인별 보직관리, 전문분야 선택제 운영 등 세부기준 마련
17	주의, 경고 처분에 대한 근거 규정 미비	직원 신분 처분시 예 측가능성 제고 및 비 위예방을 위해 주의. 경고 조치기준 근거 마련	○ 인사규정 개정(6.18,132회 이사회결의결) -주의(경고)조치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○ 인사규정 시행세칙 개정(9.15) -징계기준, 효력, 운영 등 세부기준 정비 ○ 징계제도 운영지침 마련중
18	피해구제 합의 사항 이행여부 점검체계 도입	합의사항 이행여부 점검 방안 강구	○ 피해구제 종료시 합의사항 미이행 처리 절차 등을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안내활동 강화 -사업자 미이행시 담당자에게 통보토록 소비자에게 안내문(SMS) 발송 ○ 감사실 해피콜서비스를 통한 확인 요청 -해피콜 시 합의내용 이행여부 확인
19	「인터넷상담 자율처리시 스템」 운영 방식 개선	인터넷상담 자율처 리시스템상 신청인 자율처리 동의/부동 의 선택방안 마련	○ 인터넷상담 자율처리시스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소비자에게 자율처리여부 선택 방안을 포함한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, 시행(10.12)